

의안
번호

397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2.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고영욱의원 외 7명

나. 의안번호 : 제397호

다. 제출일자 : 2024. 11. 6.

라. 회부일자 : 2024. 11.15.

2. 제안이유

- 성북구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대상 및 수강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 라.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08. ~ 2024. 11. 1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성북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 능력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등을 종합한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디지털 이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 사료 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 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키오스크, 인터넷 상거래 등 고령층 대상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 됨.

□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성북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는 어르신의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65세 이상의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와 제6조(지원사업)는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한 교육 및 정보화교육, 현장체험학습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사무의 위탁)와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함.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지능정보화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성북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여 성북구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됨.